

노사발전 상생협정서

위배 누가 했나?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르더라도 노동3권은 보장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함)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하며, '광주시'와 포괄하여 '협약 당사자'라 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의 구현을 도모하며, 그 연장에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함) 내의 완성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완성차 사업은 광주시 및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이하 '상생협정서'라 함)의 적정임금 및 노사협력모델 등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상생협정서와 그 부속결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이하 '부속서'라 함)은 본 협약의 일부로서 첨부한다. 광주시는 상생협정서 및 부속서가 신설 법인(아래 제2조에서 정의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8. 본 협약서는 투자자 모집 완료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무노조, 무파업을 의미한다면 이 조항대로 법률 위반이므로 무효

(첨부1)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 다 음 -

1.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의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

- ②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 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애초 "임단협 5년 유예" 문구가 헌법의 노동3권과 노조법 위반이 명백해 노동계가 반발하자 수정한 문구로 노조가 결성되면 임단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광주시, 현대차, 노사민정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원칙과 기능에 근거 운영.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첨부2)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 ①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의 취지와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사를 포함한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봉과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 설정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다. 신설법인은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연봉을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기준)으로 한다.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연봉
3500만원(주44시간 기준)**



(첨부1)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2.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지원

② 협의회는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성과금의 경우 기업의 경영 성과 및 생산성 향상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 법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③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연봉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임금체계 단순화 및 안정화
 - 나. 직무·직능급 가미
 - 직무 기본급 :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를 통하여 각 직무별로 설정
 - 직능 기본급 : 숙련도, 역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 다. 성과급
 - 경영실적과 연동한 합리적 성과배분기준 마련, 적용

직능기본급은 4년차가 되어야 직능급 월 2만인 수당이 신설되는 게 전부인 불합리한 임금체계였다.

“협의회는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제시하고 준수한다.

“고려하여”를 반영하여 물가상승률 +@를 할 수도 있지만 상생협의회는 임금인상을 물가인상률대로만 했다.

(첨부1-1)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5.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생협정서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상생협정서가 명시하지 않은 다른 의결, 협의 및 보고사항은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운영 원칙에 따른다.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

근참법

상생협의회 결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제반법령인 근참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르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시급 비교표

(단위 :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가인상률	2.5%	5.1%	3.6%	2.3%	
1.법정 최저임금	8,720	9,160	9,620	9,860	10,030
2.광주 생활임금	10,801	11,630	11,930	12,760	12,930
3. 지지엠 초임	10,500	10,500	10,770	10,770	?
3과 1의 차액	1,780	1,340	1,150	910	?
3과 2의 차액	-301	-1130	-1160	-1990	?

최저임금과 광주시 생활임금은 해마다 인상되는데 광주글로벌모터스 초임은 2년에 한번 인상한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 생활임금, 지지엠 초임 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더 열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2024년 연봉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연봉

3500만원(주44시간 기준) 2019년 1월 31일 부속 협정서

입사년도	24년연봉(주44시간 기준)	격려금	합계연봉
2021년	2천829만원	총 570만원	3천399만원
2022년	2천736만원	설/하계휴가/추석 900,000	3천306만원
2023년	2천639만원	격려금 1,000,000 생산기여금 3,800,000	3천239만원
2024년	2천576만원		3천136만원

사회적 임금 370만원

주거비 3,432,000원 / 문화바우처 15만원 / 건강검진비 2년 1회 25만원

입사 5년차의 2024년 주44시간 연봉이 격려금 포함 34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주44시간 기준 평균초임연봉이 3500만원이었지만 4년차도 이에 미치지 못할 만큼 열악하다.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상생협의회 선거 개입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먼저, 귀 위원회가 제기한 근로자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생협의회 선거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및 의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관련 회사 취업규칙 징계사유에는 상생협의회 선거 개입 등에 관한 구체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개입 금지 및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만 존재할 뿐 근로자선거에 개입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기에 해당 사안에서 신청인들이 요하는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개입이나 방해의 의미는 특정 후보를 지정하거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선거관리 위원이 되는 경우,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주적 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유관기관의 시정 지도 및 법의 확정 등 결정사항이 도달하는 경우 그 의견을 성실히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

노사상생협의회가 회사 거수기인 이유

회사 관리자 개입 근로자 위원 선출 부정선거

녹취록 등 부정선거 증거자료 제출해도
징계사유 처벌 규정 없다며 징계 거부